

국가 및 지자체 운영 교육기관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관련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 제6항~제12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9조
2. 적용기간 : 2023년 1월 1일(시행일)부터 차기 개정일까지 적용
3. 적용범위 :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 일부분의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 이용. 단,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 가능
4. 적용대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5. 보상금 납부 : 위와 같은 저작물 이용의 경우,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이용에 따른 보상금을 아래 기준에 따라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지급

6. 보상금 기준

1) 보상금 기준 및 산정

이용형태	산정방식 및 납부 기준액 (납부자가 아래 방식 중 선택)	
	종량방식	포괄방식
저작권법 상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 (단, 중복 산정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문: A4 1쪽 분량 당 7.7원 - 파워포인트는 1매당 3.8원 ○ 이미지: 1건당 7.7원 ○ 음악: 1곡당 42원 ○ 영상물: 5분 이내 176원 * 영상물의 5분 이내의 사용은 5분으로 보며, 초과 이용은 10초 당 10원씩 가산 * 어문 저작물의 1% 이내, 음악 및 영상 저작물의 5% 이내(최대 30초) 이용의 경우는 보상금 대상에서 제외 	<p>수강생 1인의 시간당 기준금액은 다음으로 함.</p> <p>(대면수업) 12원/인·시간</p> <p>(원격수업) 32원/인·시간</p>

- "종량방식"은 저작물의 이용량(저작물의 총 이용횟수 및 분량)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
- "포괄방식"은 과정별 수강생 수 및 교육시간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
- 산정방식(종량 또는 포괄)은 납부자가 선택하되, 보상금수령단체가 공지한 기한 내 납부자가 선택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상금 수령단체가 결정

2) 기준에 대한 해석

- 저작권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지방공무원교육원 등)을 의미함
- 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 수령단체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
- 저작권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내역을 제출하되, 구체적인 이용내역 제출 방식은 보상금 수령단체와 별도 협의
- 보상금 기준 고시 이후 2개월 이내에 저작권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수업에서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포기 동의서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량방식 보상금을 감액 징수하거나 보상금 분배 시 무료 이용분에 대해 환급 정산함
-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이용자 요청 시 공동)는 수업기관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 및 분배 정산에 활용함

- 포괄방식 이용내역 확인 등을 위한 실태조사 비용 부담은 이용자와 보상금 수령단체 간 별도 합의에 따름.

7. 참고사항

- “수업 목적”이란 교육과정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장의 관리 감독 하의 대면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원격수업*에 제공할 목적을 말함
 - 교육기관의 저작물 이용 중, 교육훈련 관련 개별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일반인 대상 강좌, 공개강좌 등에서의 저작물 이용은 “수업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저작권자로부터 별도로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 * 원격수업 : 교육기관이 지능정보기술(「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말한다)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시간적·공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실시하는 일체의 수업활동(다수의 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의미함
- 교·강사 등의 개별적인 연구 활동은 “수업 목적”에 포함되지 않음
 - 그러나,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음.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함 (저작권법 제30조)
- ‘프로그램 저작물’은 본 기준 고시의 적용 대상이 아님
 -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해서는 수업 목적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부칙 <제2023-****호, 2023. 1.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업목적 이용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 포기 동의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권리자	성명(법인명)	한글) 한자)				
		영문)				
	소속		직위			
	국적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자택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저작물	제호 (제목)	※ 출판된 저작물은 출판사 및 출판연도까지 기재		종류	※ 어문, 음악, 영상, 미술, 사진 저작물 등으로 표시	
	제호 (제목)	※ 논문은 발행지, 발행년월, 발행호수, 시작과 끝 쪽수까지 기재		종류		
	제호 (제목)			종류		
청구권 포기 대상	본인의 모든 저작물(), 일부 저작물() ※ 일부인 경우 목록 첨부, 전체 중에서 일부를 배제하는 경우에도 배제 대상 저작물 목록 제출 가능					
특이사항						

본인은 상기 저작물을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수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문학예술풍회
이사장

귀하

유의사항

- 출판사 등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위 포기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지 아니함
- 2인 이상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공동저작권자를 명시하여 제출
- 제공된 정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보상금수령단체(한국문학예술풍회)에서 보상금 기준 산정 및 분배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뒷면 개인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동의하여야 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에 의거 귀하의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상금수령단체인 한국문학 예술저작권협회에서 보상금 산정 및 분배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한글, 한자, 영문), 소속, 직위, 국적, 생년월일, 연락처(자택,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저작물명(제호), 종류

개인정보 보유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3자 제공

수집된 개인정보는 저작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고시하는 데에 활용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의 제공 범위 : 성명(한글, 한자, 영문), 소속, 직위, 국적, 생년월일, 연락처(자택,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저작물 확인을 위한 정보
2. 정보의 이용목적 : 보상금 산정 및 분배 기초 자료로 활용
3.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상금 산정 및 분배 완료까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속 _____ 직위 _____ 성명 _____ (서명)